

1_서울시 저소득가구 현황

[표 부록1-1] 서울시 저소득가구 현황(2018년 12월 기준)

권역	시군구	전체 가구 수*	기초생활수급						기초 수급자 수(명)	차상위 계층 수** (명)
			가구 수	비율 (%)	생계 급여 (가구)	의료 급여 (가구)	주거 급여 (가구)	교육 급여 (가구)		
도심권	종로구	63,773	3,109	4.88	3,157	3,398	2,873	329	4,450	2,088
	중구	53,102	3,360	6.33	2,690	2,929	3,090	399	4,266	1,942
	용산구	92,500	4,910	5.31	4,052	4,407	4,601	688	6,515	2,537
동북권	성동구	123,963	5,583	4.50	4,120	4,556	4,961	911	7,839	4,523
	광진구	148,735	6,102	4.10	4,041	4,542	5,247	1,243	8,720	6,031
	동대문구	146,974	9,280	6.31	7,181	7,809	8,388	1,342	12,453	6,303
	종랑구	159,444	11,818	7.41	8,693	9,488	10,106	2,478	17,070	11,239
	성북구	171,943	8,824	5.13	7,207	7,670	8,117	1,661	12,909	7,366
	강북구	127,551	11,125	8.72	8,596	9,425	9,990	1,961	16,175	10,119
	도봉구	126,286	7,666	6.07	5,529	6,231	6,599	1,782	11,470	7,997
서남권	노원구	202,326	17,022	8.41	13,936	15,074	15,846	2,658	26,012	12,604
	은평구	181,338	11,876	6.55	10,036	10,959	12,010	2,698	19,677	10,036
	서대문구	127,197	6,014	4.73	5,087	5,479	5,160	1,054	8,820	5,455
	마포구	154,940	5,550	3.58	4,508	4,927	5,139	793	8,206	4,899
	양천구	162,039	8,175	5.05	5,816	6,487	7,310	1,717	12,118	7,422
	강서구	235,754	15,432	6.55	12,400	13,521	14,268	2,097	22,252	10,888
	구로구	156,235	6,107	3.91	4,985	5,488	5,579	1,173	8,906	5,729
	금천구	96,298	6,737	7.00	5,445	5,985	6,114	1,179	9,820	5,607
	영등포구	149,831	6,394	4.27	5,528	5,948	6,061	755	8,511	3,705
	동작구	161,495	6,375	3.95	4,912	5,322	5,939	1,122	9,306	5,450
동남권	관악구	236,761	10,371	4.38	8,276	9,002	9,704	1,559	14,455	6,970
	서초구	155,418	3,574	2.30	2,572	2,991	3,299	636	5,477	3,462
	강남구	203,083	7,208	3.55	6,287	6,812	7,162	1,002	11,507	4,580
	송파구	243,547	7,680	3.15	5,338	5,931	7,080	1,601	12,019	7,265
	강동구	159,233	6,986	4.39	5,599	6,133	6,602	1,361	10,389	6,421
총 계		3,839,766	197,278	5.14	155,991	170,514	181,245	34,199	289,342	160,638

* 전체 가구정보 및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서울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전체 가구정보는 외국인가구 및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기준)

** 차상위계층 정보: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통계(<http://www.ssis.or.kr>)

[표 부록1-2] 가구특성에 따른 서울시 저소득가구 변화

년도	기초생활수급 가구 수 (가구)	가구구성원별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인가구 비율		
2010	122,745	77,730	21,963	14,091	6,574	2,387	63.3%		
2011	121,283	78,818	21,410	12,905	5,908	2,242	65.0%		
2012	120,704	80,860	20,786	11,773	5,218	2,067	67.0%		
2013	124,627	84,761	21,417	11,395	5,074	1,980	68.0%		
2014	129,895	89,797	22,187	11,139	4,861	1,911	69.1%		
2015	163,107	99,459	29,291	18,444	10,913	5,000	61.0%		
2016	173,675	105,216	31,425	19,718	11,673	5,643	60.6%		
2017	176,009	111,368	31,388	18,291	10,124	4,838	63.3%		
2018	197,278	130,620	35,215	17,762	9,241	4,440	66.2%		
년도	가구특성별 (가구)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정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세대	일반세대	기타		
2010	35,033	1,037	13,152	2,677	23,817	39,424	7,605		
2011	35,434	908	12,718	2,648	24,364	38,065	7,146		
2012	36,469	753	12,071	2,470	24,300	37,127	7,514		
2013	38,509	658	12,139	2,525	24,967	37,694	8,135		
2014	40,396	571	12,387	2,636	25,682	39,296	8,927		
2015	44,932	538	20,911	5,221	27,645	51,462	12,398		
2016	46,370	453	23,561	6,047	28,214	55,310	13,720		
2017	47,679	355	23,199	5,832	28,901	56,252	13,791		
2018	58,799	311	23,760	5,894	31,139	60,256	17,119		
년도	연령별* (기초생활수급자 수, 명)								
	소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0	201,204	9,945	38,913	12,462	11,513	33,015	29,377	25,613	40,366
2011	194,119	8,659	35,256	12,494	10,064	30,616	30,916	24,615	41,499
2012	188,017	7,934	31,038	12,441	9,062	27,950	31,250	24,315	44,027
2013	190,480	7,661	28,710	13,184	8,540	27,128	32,853	25,616	46,788
2014	194,808	7,682	26,609	14,192	8,397	26,233	35,035	27,682	48,978
2015	246,580	13,163	51,584	16,583	9,495	29,139	39,639	33,291	53,686
2016	255,226	13,494	54,753	16,875	9,229	28,214	41,124	35,912	55,625
2017	251,809	11,951	48,059	16,847	8,912	26,976	42,386	38,615	58,063
2018	277,991	11,778	43,968	18,066	10,525	28,218	46,834	46,902	71,700

*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의 합
 ([표 21]은 시설수급자를 포함한 통계이기 때문에 전체 수급자 수에 오차 발생)

2_실태조사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서울시민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	ID				
------------------	----	--	--	--	--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과제의 일환으로,

서울시 가구의 에너지소비 특성과 에너지복지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서울시 에너지복지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해 주신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설문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관기관** : 서울연구원
 ◆ **조사기관** : (주)글로벌리서치

◆ 조사 지역				
(1) 도심권	:	① 종로구	② 중구	③ 용산구
(2) 동북권	:	④ 성동구	⑤ 광진구	⑥ 동대문구
		⑧ 성북구	⑨ 강북구	⑩ 도봉구
(3) 서북권	:	⑫ 은평구	⑬ 서대문구	⑭ 마포구
		(4) 서남권	:	⑮ 양천구
(5) 동남권	:	⑰ 구로구	⑱ 금천구	
		⑲ 영등포구	⑳ 동작구	㉑ 관악구
		㉒ 서초구	㉓ 강남구	㉔ 송파구
				㉕ 강동구

PART 0

일반사항

문 1 귀하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 월 일)

문 2 귀하께서는 가구주(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와 어떤 관계입니까?

- ① 가구주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기타(구체적으로:)

문 3 귀댁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일시적 동거인은 제외하고 기입해 주십시오. 함께 살고 있는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등이 2명 이상일 경우 개인별로 구분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순번	가주와의 관계	출생연도	성별	장애 여부*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부모 ⑤ 형제자매 ⑥ 조부모 ⑦ 손자녀 ⑧ 친척 ⑨ 기타동거인	출생연도 기 입	① 남성 ② 여성	① 해당 ② 해당없음
ex.	① 가구주	1986	① 남성	① 해당
1				
2				
3				
4				
5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만 해당

▶ 총 가구원 수 (일시적 동거인 제외) : ()명

문 4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정부보조금, 공공급여, 연금, 부모나 친척의 지원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해 주십시오.

() 원

◆ 가구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합

-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등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
- ▶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 등에서 얻는 소득
- ▶ **재산소득:** 부동산·동산·권리 등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이자나 배당 등의 이자소득, 민간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
- ▶ **기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의 공적이전소득, 친족이나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3개월 이상이나 1년 3회 이상) 금품 등의 사적이전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경조소득, 복권당첨금 등 포함

문 5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상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주거급여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교육급여
- ⑤ 차상위계층
- ⑥ 기타 저소득가구

PART 1 주거생활에 관한 사항

문 6 귀댁이 거주하시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③ 연립주택
- ④ 다세대주택
- ⑤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등)
- ⑥ 주택이외의 거처(구체적으로:)

◆ 주택의 유형

- ▶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 **아파트:** 5층 이상의 모든 주거용 건물
- ▶ **연립주택:** 전체 층이 4층 이하이면서 1당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거나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인 주택
- ▶ **다세대주택(구분소유):** 연면적 660㎡이하이면서 4층 이하인 건물에 2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주택. 각 세대별로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별도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구분 소유 및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
- ▶ **다가구주택(단독소유):** 연면적 660㎡이하이고 3층 이하의 주택 1개동에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 각 가구마다 독립된 부엌과 화장실을 갖춘 주택. 다가구 허용 가구수는 2~19세대까지 허용하지만 분양할 수 없음
- ▶ **주택이외의 거처:**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고시텔 등

문 7 귀댁의 주택점유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부 월세(보증금 포함 월세)
- ④ 월세 / 사글세
- ⑤ 영구·공공·국민임대
- ⑥ 무상(부모집, 친척집, 친구집, 사택 등)
- ⑦ 기타(구체적으로:)

문 8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일세 및 주세는 월세로 환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금액
① 자가	시세	원
② 전세	보증금	원
③ 보증부 월세	보증금	원
	월세	원
④ 월세 / 사글세	월세	원
⑤ 영구·공공·국민임대	보증금	원
	월세	원

문 9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거주 층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지하(반지하 포함) ② 지상 (총 건물의 층) ③ 옥상(옥탑방)

문 10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건축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1979년 이전 ② 1980년대 ③ 1990년대
④ 2000년대 ⑤ 2010년 이후

문 11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사용면적과 방의 갯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용면적을 기입해 주시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만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용면적	거실면적	침실	
			개수	면적
	평	평	개	평
① 주택 전체				
② 겨울철(12월~2월) 1일 1시간 이상 난방				
③ 여름철(6월~8월) 1일 1시간 이상 냉방				

문 12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외벽창문 수는 어떻게 됩니까?

외벽창문 중 이중창문, 이중유리창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외벽 창문 수	총 () 개
① 단창 수	총 () 개
② 이중창문 수	총 () 개
③ 이중유리창 수	총 () 개

문 13 귀댁에서 사용 중인 난방시설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아래의 항목에서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1) 주 난방시설	(2) 보조 난방시설

- | | |
|------------------|------------|
| ① 연탄아궁이/연탄보일러 | ② 석유 보일러 |
| ③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 ④ 도시가스 보일러 |
| ⑤ 중앙난방 | ⑥ 지역난방 |
| ⑦ 전기보일러 및 전기온돌 | ⑧ 전기장판/매트 |
| ⑨ 전기난로, 전기온풍기 | ⑩ 연탄난로 |
| ⑪ 석유난로(경유 또는 등유) | ⑫ 가스난로 |
| ⑬ 기타(구체적으로:) | ⑭ 없음 |

문 14 귀댁에서 사용 중인 냉방기기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 |
|---------------|-------|
| ① 선풍기 | ② 에어컨 |
| ③ 기타(구체적으로:) | ④ 없음 |

문 15 귀댁에서 사용 중인 취사연료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아래의 항목에서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1) 주 취사연료	(2) 보조 취사연료

- | | |
|--------|----------------|
| ① 연탄 | ② 석유(경유 또는 등유) |
| ③ 부탄가스 | ④ 프로판가스(LPG) |
| ⑤ 도시가스 | ⑥ 전력(전기) |
| ⑥ 없음 | ⑦ 기타(구체적으로:) |

- ▶ 냉장고: 냉장고(일반형, 양문형), 김치냉장고, 냉동고 모두 포함해 주십시오.
- ▶ 세탁기: 일반형, 드럼형세탁기, 아기용세탁기, 의류건조기 모두 포함해 주십시오.
- ▶ 에어컨: '일평균 사용시간'은 실제 에어컨을 가동한 날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 컴퓨터: 데스크탑, 노트북 모두 포함해 주십시오.
- ▶ 전기밥솥: 취사용과 보온용 구분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 보일러: 야간에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칸에 기입해 주십시오.
- ▶ 보조 난방기기: 전기장판/매트, 온수매트, 전기난로, 전기온풍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보조 난방기구를 모두 포함해 주십시오.
- ▶ 기타기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프린터, 팩스, 복합기, 전기스탠드 등

문 17 **귀댁에 조명기기 보유현황 및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아래의 답지를 이용해 순서대로 기록해 주십시오.)

번호	기기명	개수	일평균 합계 사용시간(h)*
1	백열등 (일반, 할로겐 등)		
2	형광등 (직관형, 환형 등)		
3	LED (전구형, 램프형, 모듈형, 판형 등)		

* 사용시간은 종류별로 개별 조명기기 사용시간의 합산하여 적어주십시오.

문 18 **귀댁의 에너지별 사용금액 및 사용량은 어떻습니까?**

(아래의 답지를 이용해 순서대로 기록해 주십시오. 필요시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연탄		등유		경유		프로판 (LPG)		도시가스		전력		열 (지역난방)		기타 ()	
	원	장	원	리터	원	리터	원	kg	원	m ³	원	kWh	원	1,000 kcal	원	
가을철 ('18.9.~ '18.11.) 월평균																
겨울철 ('18.12.~ '19.2.) 월평균																
봄철 ('19.3.~ '19.5.) 월평균																
여름철 ('19.6.~ '19.8.) 월평균																

* 일반적인 석유통은 20L입니다.

** 에너지별 사용금액에는 지원이나 감면혜택을 받으신 금액을 제외한 **실제 지출하신 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종류 및 주요특성

<p>열탈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개의 붉은 보루지 또는 물집(목, 가슴, 사타구니, 팔다리 등) 	<p>열부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발이나 발목이 부음 	<p>열탈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땀을 많이 흘림 (40℃ 이하) ·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p>열경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육경련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등) 	<p>열실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지러움 ·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음 	<p>열사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열(40℃ 초과) · 의식장애, 혼수상태 · 땀이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문 23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한파로 인한 건강이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그 증세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 | | |
|-----------|--------|----------------------------|
| ① 감기 | ② 동창 | ③ 침수병(참호병) |
| ④ 동상 | ⑤ 저체온증 | ⑥ 기타() |
| ⑦ 해당사항 없음 | | |

◆ 질병관리본부 주요 한랭질환 종류 및 주요특성

- ▶ **동창:** 영상의 온도인 가벼운 추위에서 혈관 손상으로 염증이 발생. 피부가 빨개졌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오면 후끈거리며 간질간질해지는 것이 주요 증상으로 사람에 따라 통증을 느끼기도 함
- ▶ **침수병(참호병):** 손·발 등을 냉수에 오래 담그고 있을 때 발생하는 병으로, 겨울철에는 차갑고 습한 공기에 오래 노출되거나 축축하고 차가운 신발을 오래 신고 있을 때 주로 나타남. 손끝이나 발 끝에 부분적으로 한랭손상이 발생
- ▶ **동상:** 추위에 신체부위가 열게 되어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주로 코, 귀, 뺨, 턱, 손가락, 발가락에 걸리며 최악의 경우 절단이 필요한 질환. 마비, 통증, 따끔거림, 아린감이 느껴지며 증세가 지속되면 피부가 검붉어지며 물집이 생긴다. 심한 경우 피부와 피부조직의 괴사, 감각손실, 근육 및 뼈 괴사가 발생.
- ▶ **저체온증:**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온몸과 팔다리의 심한 떨림 증상이 발생. 체온이 34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의식을 잃게 됨.

문 24 **귀댁에서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지난 2년(2017년 10월~2019년 9월) 간 병원을 가신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횟수와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입해 주십시오.**
 (지병이나 부상이 아닌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병원방문입니다. 없다면 0회, 0원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 () 원

문 25 **귀댁은 다음 각각의 에너지 복지 지원항목을 알고 있습니까?**

문 26 (문 25 인지하고 있는 항목에 한해 답변) 귀댁은 다음 각각의 에너지 복지 지원항목에 대해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문 27 (문 26 수혜를 받는 항목에 한해 답변) 귀댁이 지원을 받고 있는 에너지 복지 지원항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족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1점: 매우불만, 2점: 불만,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

문 27-1 (문 26 수혜를 받는 항목에 한해 답변) 그렇다면 에너지 복지 지원항목의 주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도 좋으니 해당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항목	문 25 인지여부	문 26 수혜여부	문 27 만족도	문 27-1.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
			낮음 (←) → 높음	
1. 전기요금 감면	① 인지 ② 비인지	① 수혜 ② 비수혜	①·②·③·④·⑤	
2. 도시가스요금 감면	① 인지 ② 비인지	① 수혜 ② 비수혜	①·②·③·④·⑤	
3. 지역난방비 감면	① 인지 ② 비인지	① 수혜 ② 비수혜	①·②·③·④·⑤	
4. 에너지바우처	① 인지 ② 비인지	① 수혜 ② 비수혜	①·②·③·④·⑤	
5. 연탄쿠폰	① 인지 ② 비인지	① 수혜 ② 비수혜	①·②·③·④·⑤	
6. 등유 바우처	① 인지 ② 비인지	① 수혜 ② 비수혜	①·②·③·④·⑤	
7. 연료지원사업	① 인지 ② 비인지	① 수혜 ② 비수혜	①·②·③·④·⑤	
8. 전기요금지원사업	① 인지 ② 비인지	① 수혜 ② 비수혜	①·②·③·④·⑤	
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① 인지 ② 비인지	① 수혜 ② 비수혜	①·②·③·④·⑤	
10.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지원	① 인지 ② 비인지	① 수혜 ② 비수혜	①·②·③·④·⑤	
11. 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① 인지 ② 비인지	① 수혜 ② 비수혜	①·②·③·④·⑤	
12. 기타 ()	① 인지 ② 비인지	① 수혜 ② 비수혜	①·②·③·④·⑤	

문 28 (문26 문항의 해당 에너지 복지 지원항목 비수혜자의 경우)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원 사업이 있는 것 자체를 몰라서
- ② 신청방법 및 절차를 몰라서
- ③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 ④ 관심이 없어서
- ⑤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 ⑥ 추가비용이 부담되어서
- ⑦ 기타()

에너지 복지 지원항목 안내

지원항목	신청방법	내용
전기요금 감면	① 복지포 온라인신청 ②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월 최대 16,000원 (간편※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②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월 최대 10,000원 (간편※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③ 차상위계층: 월 최대 8,000원 (간편※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④ 장애인(상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한정): 월 최대 16,000원 (간편※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① 복지포 온라인신청 ②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청사용 1,680원/월,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월, 그외(4-11월) 6,600원/월 ② 기초생활수급자(주거): ①의 50% ③ 기초생활수급자(교육): ①의 25% ④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분리부담 경감, 한부모가족): ①의 50% ⑤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①의 25% ⑥ 장애인(상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한정): ①과 동일
지역난방비 감면	① 복지포 온라인신청 ②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한 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월 10,000원 ②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월 5,000원 ③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분리부담 경감, 한부모가족): 월 5,000원 ④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해당없음 ⑤ 장애인(상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한정): 월 5,000원
에너지 바우처	①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에 해당하며, 수급자와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5세 이상 혹은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차등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91,000원(여름 5,000원, 겨울 86,000원) 2인 가구: 128,000원(여름 8,000원, 겨울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56,500원(여름 11,500원, 겨울 145,000원) 보장시설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통정기 연료비 수급자,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등유나눔카드(한국에너지재단)를 발급받은 가구, 연탄부른(한국광해관리공단)을 발급받은 가구 제외

에너지 복지 지원항목 안내

지원항목	신청방법	내용
연탄쿠폰	① 지자체별 광해관리공단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실현 및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가격 인상 금액에 대한 차액만큼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사업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구,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 '18년 사업 기준 가구당 406,000원 지급
등유 바우처	① 지자체별 한국에너지재단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스 인입이 되지 않은 낙후지역의 저소득층 생존권 보장 도시가스, 전기요금, 연탄 등의 지원은 이미 되고 있고, 에너지 비용부담이 높은 등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지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세대 또는 소년소녀세대 * '19년 사업 기준 가구당 310,000원 상당 등유카드(등유 200리터 상당)
연료지원사업	① 지자체별 한국에너지재단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에너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중증질환자, 소년소녀 세대 등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각지대 대상 홍철기 난방에너지 구입, 난방렌트, 온수매트 등 난방용품 등 지원(가구당 10만원 한도 내)
전기요금지원 사업	① 지자체별 한국에너지재단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으로 기초에너지이용 보장 및 생계 관련 안전사고 예방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가구 가구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①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거주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한 에너지구입 비용 절감 단열-창호-바닥배관 등 에너지효율 시공지원, 고효율 보일러-냉방기기 등 물품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지자체 추천) 등 저소득가구 전국 3만 가구 대상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지원	① 지자체 직접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기존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
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①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할풍력 등) 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50% 이내) 매년 LH공사와 협약을 통해 LH임대주택 3천~5천가구 대상(전국)